

행 정 자 치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정직·강등 및 직위해제처분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, 양구군, 정선군, 횡성군, 철원군

내 용
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강등·정직·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

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「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8조에 따르면 결근일수·정직일수·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, 휴직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*에 따라 산출된 연가일수를 공제하며, 같은 조례 제21조에서는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.

※ 휴직한 경우 연가일수 산출 : [해당연도 휴직기간(개월)/12개월] × 해당연도 연가일수

그러나 강원도 본청과 4개 시·군에서는 정직(강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)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

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위 조례에 따라 연가일수를 공제하도록 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아 연가일수가 없음에도 연가 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, 결근일수에 대한 봉급 미감액 등 총 22,868,100원의 봉급 및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보수 등에 낭비를 초래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, 양구군수, 정선군수, 횡성군수, 철원군수는

징계(정직·강등)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연가일수 미공제, 결근일수에 대한 봉급 미감액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등 22,868,100원([확인서]에 따른 기관별 해당액)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라며, 향후 징계처분(정직·강등) 및 직위해제처분 등에 따른 연가일수 공제를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